

## 2025학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운영 계획



2025. 2.

서울특별시교육청  
[학생맞춤지원담당관]



### 사업시행전 검토항목

영역	사업시행전 검토항목별 세부내용	검토 완료	해당 없음	실행내용 및 방법
1	현장(학생, 학부모, 교직원, 시민 등)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2	전문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3	갈등 요소 또는 갈등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 【징후 점검 요소】 ✓ 최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었다. ✓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. ✓ 온라인 매체 등에 부정적 게시물이 다수 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4	안전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개인정보 보호 철저 행정사항 안내
5	관련 법령, 조례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국민기초생활보장법, 초·중등교육법, 한부모가족지원법
6	행용순 정어화 적절한 우리말 중심의 행정용어를 사용하였습니까?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우리말 중심 행정용어 사용
7	관련 부서, 유관 기관과의 사전검토를 하였습니까?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교육부
8	학자운 교홀영 학교 업무부담 유발 정도를 검토하였습니까?  학교 내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 발생 정도를 검토하였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9	평가 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?  사업에 대한 일몰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10	홍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홍보계획(안)(학생맞춤 지원담당관-2661, 2025.2.25.)
11	기타			

# ■ ■ 목 차 ■ ■

- I. 목적 및 근거 ..... 1
- II. 추진 실적 ..... 1
- III. 세부 추진 방안 ..... 2
- IV. 운영 방법 및 유의사항 ..... 5
- V. 행정 사항 ..... 8
- VI. 기관별 안내사항 ..... 9
- VII. 향후 추진 일정 ..... 11

## 붙임

- 1. 2025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..... 12
- 2. 교육비 지원 자격 관련 주요 용어설명 ..... 13
- 3.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의 교육비 지원 ..... 14
- 4. 부정수급 방지 및 보장 비용 징수 ..... 15
- 5.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 중지 요청서 양식 ..... 16

# 2025학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운영 계획

## I 목적 및 근거

### □ 목적

-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
- 학생·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직접 지원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교육비 부담 경감

### □ 추진 근거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, 제62조, 제67조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7, 제106조의2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90조부터 제92조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4조, 동법 시행규칙 제7조
- 2025년 늘봄·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요령 및 점검 계획 안내(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813, 2025. 2. 24)
-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운영방안 안내(교육부 학생맞춤융합지원과-967, 2025. 2. 25.)
-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(안)(학생맞춤지원담당관-2649, 2025. 2. 25.)

## II 추진 실적

### □ 최근 3개년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, 명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
최종예산	16,429,075	17,653,018	16,391,132
집행액	15,049,515	16,487,637	11,936,715
지원 인원	23,106	23,235	22,733

### III 세부 추진 방안

#### □ 지원 개요

- 지원 기간: 2025년 3월 ~ 2026년 2월 (1년)
  -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
- 지원 대상: 초·중·고등학교<sup>1)</sup>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

구분	지원 자격([붙임3] 참조)	대상 확인
1	법정 저소득 자격	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
2	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3		법정차상위대상자
4	소득인정액 기준	중위소득 80% 이하 '교육복지 심사보장결정관리'
5	학교장 추천	추천 비율* 15% 범위 내 *비율(%)=(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지원 학생 수 / 자유수강권 지원 선정 학생 수)×100 단, 선정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1명 추천 가능
기타	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([붙임5] 참조)	

- 중복지원 제외 대상: 특수학교(급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과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미지원

\* 단, 초·중·고등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 대상임

#### ○ 지원 내용

- 지원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<sup>2)</sup>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\* 지원(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)
  - \* 수강료: 강사료 + 도서구입비 + 재료구입비(간식비포함) + 수용비
- 학교회계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, 보호자나 강사에게 직접 교재비나 재료비 등 현금 지원은 불가
- 1인당 60만원을 소진하고, 추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지원 대상 학생에게 연간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(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)

1) 각종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포함

2) 방과후학교: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활동으로,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

※ 「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」(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), 「2025 방과후학교 길라잡이」(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)에 의거하여 운영

#### □ 2025년 지원 예산 규모

(단위: 명, 천원)

구분	설립	학교급	지원(예상)인원	예산액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	공립	초	12,692	12,413,640
		중	8,621	
		고	5,383	
	사립	초	37	2,525,685
		중	2,826	
		고	8,868	
합계			38,427	14,939,325

#### □ 지원 범위

##### ○ 방과후학교 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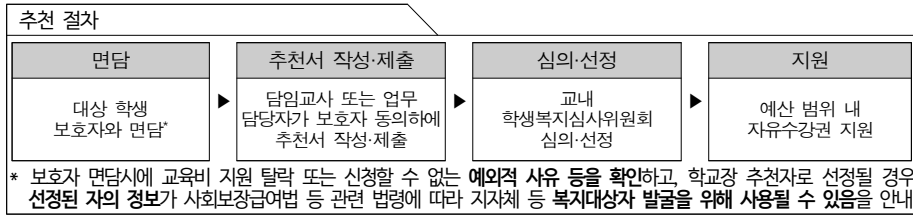
- 본교, 타교 간 연계·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, 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강좌 등 방과후학교 모든 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 및 토요일·방학 중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
-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(자문)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(입장료, 대여료, 교통비)
- \* 단, 일회성 프로그램에 자유수강권 지원은 불가하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은 제외

#### □ 지원 절차

#####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절차

예산 신청	학교 ⇨ 교육지원청 ⇨ 본청
	① 지원 대상 학생의 지원 자격 및 사용 금액 확인 ② 분기별 예산 신청 및 지원 실적 관리
예산 교부	본청 ⇨ 교육지원청 ⇨ 학교
	① 예산 신청 내역 확인 후 예산 재배정 및 교부 ② 예산 적정 집행 관리 및 점검

## ○ 학교장 추천 절차



- 대상: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, 소득·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

※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(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등 행정적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)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

- 학교장 추천 비율\*: 자유수강권 지원 선정 학생 수 15% 이하로 산정

\* 비율(%) = (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지원 학생 수 / 자유수강권 지원 선정 학생 수 ) × 100  
 \*\* 선정 학생 수 :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전체 학생(당해연도 5. 31.기준)  
 예) 김○○학생이 1, 2순위로 선정되었지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선정 학생 수에 포함  
 ※ 선정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학교장 추천 지원 가능 학생 수는 1명으로 산정

- 추천서 및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\* 의무 제출

### (\*증빙 서류(예시))

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영수증, 실직급여수급증 사본, 채권압류통지서,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, 폐업확인서,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및 진단서 등  
 ※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확인 또는 증명 가능한 모든 서류 인정 가능(면담자료 포함)

### <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예시>

- 부양의무자의 사망, 행방불명(가출 등)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부모의 이혼,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갑작스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부양의무자가 질병, 사고,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, 있어도 희귀,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
- (조)부모,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, 미등록이주아동 등 신취약계층 등

-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·지원(나이스 처리 병행)
  -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·보관
  - 부득이 선정 자료에 대한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, 선정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학생의 이름, 반, 번호 등은 가명이나 기호로 처리
  - 지원 과정에서 대상 학부모와 학생의 낙인 효과,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
  - 대상자 선정 시 자유수강권 지원 취지에 맞게 고려 가능(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학교장 추천 재고)
  -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수시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·하반기로 분리하여 실시하거나,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 실시 권장

## □ 운영 점검

- 점검항목에 따라 학교별로 서면점검(자체점검)을 실시하고, 서면점검 후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어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(컨설팅) 실시 예정
- 별도 계획 수립 후 6월경 안내 예정(운영 점검 기간: 2025년 7~9월경)

## IV 운영 방법 및 유의사항

### □ 예산 집행

- 2024학년도 지원 대상자였으나, 2025학년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2025학년도 1기 자유수강권 지원 가능
  - ※ 교육비지원 대상자가 5월에 선정되어, 1기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
- 대상자 확인: NEIS > 교육복지 > 심사관리 > 교육복지 심사보장결정관리 > 학년도 선택 > 조회 > “방과후: 완료[O] 또는 통보[O]”
- 1기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 시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가능
  - \* 단, 2025학년도 1분기(3월~5월)에 시작된 1기 방과후학교인 경우에 한함

- 월별 또는 분기별 사용 한도 및 수강 강좌 수 제한 금지
  - 과목별·분기별 사용금액 및 자유수강권으로 수강 가능한 프로그램 수를 제한하여 지원하거나 재료를 학생에게 별도로 징수하지 않도록 유의
  -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을 조기 소진할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연간 지원 한도 금액보다 적게 지원하면서 수강료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지도·감독

\* (감사원) 초·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점검 결과( '14.9), 자유수강권 지원 부적정 사례

- 동일한 수업에 대해 별도의 수강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
- 분기별로 자유수강권 실제 소요예산 파악하여 지원 예정
  - 불용 예상액을 반드시 사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 노력

## □ 지원자 관리 철저

- 지원 대상 학생의 실제 수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금 예산 집행
  - 지원금 예산 집행 시 방과후학교 출석부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
  -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대장 및 근거 서류 정리·보관
  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별 사용금액 누계 작성·관리
- 방과후학교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 이용 관리 주의사항<sup>3)</sup>
  - 지원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한 강좌에 대해 한 분기 동안 출석률 50% 미만일 경우 반드시 학생 상담 등을 통해 미출석 사유 확인 및 수강 적극 독려하고, 다음 분기에도 동일 강좌에 대하여 출석률 50% 미만일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중지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
  - 위 절차 이후에도 차분기 출석률이 50% 미만일 경우 동일 강좌에 대하여 다음 분기 지원 중단

※ (예시) 1분기 한 강좌에 대해 출석률 50% 미만인 경우 → 2분기 시작 전 학생 상담을 통해 미출석 사유 확인 및 수강 독려, 2분기에도 동일 강좌에 대해 출석률 50% 미만인 경우 3분기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 → 2분기에도 동일 강좌에 대해 출석률 50% 미만일 경우 3분기 동일 강좌 지원 중단

-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 조치\*
  - \*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10(비용의 징수), 제67조 제4항(벌칙)
  -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이 지원받게 한 경우 비용 징수 및 고발 조치([붙임6] 참조)

## □ 변동 유형별 처리 방법

- 자격 변동에 따른 처리
  - 연도 중 교육비 지원 자격 신규 취득자

기 준	구 분	지원 방법
교육비 지원 자격 신규 취득	교육비 지원 심사 완료 전	교육비 지원 신청일(日)이 속하는 달(月)부터 지원
	교육비 지원 “미선정”으로 심사 완료 후	신규로 법정저소득층 자격을 취득했다라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※ 교육비 지원 재신청 달(月)부터 지원

- 연도 중 교육비 지원 자격 해지자: 교육비 지원 신청하여 기선정된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 자격에서 탈락하였다더라도 당해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
- 지원 중지에 따른 처리

구 분	지원 방법
교육비 지원 중지	교육비를 지원받는 자가 학교에 지원 중지를 요청 ⇨ ‘교육비 지원 중지 요청서[붙임기]’를 징구 ⇨ 내부결재 후 보장 중지 처리
교육비 지원 신청 취소(철회)	신청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취소(철회)를 요청

- 학적 변동에 따른 처리

구 분	처리 방법	
전·출입	전출교	지원 대상 학생의 교육비 지원 내역(지원 자격, 사용금액 등)을 반드시 입력하여 전출처리[NEIS > 교육복지 > 수급자관리 > 교육복지 전출입관리] 또는 해당내용을 전입교로 공문 시행
	전입교	전입생이 전출교에서 사용한 교육비 지원 내역을 확인하여 1인당 연간 지원금액 중 사용 잔액만큼 지원 ※ 타 시도로 전출 시 해당 시·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기준에 따름
휴학	지원 대상자 자격 유지(교육비 지급만 중단)	
자퇴·퇴학	자퇴·퇴학 시 지원을 중지하고, 해당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을 재신청하여야 함	

3) 감사원 교육감사단 제1과-1640, '13.6.에 따라 참여 불성실한 학생의 제재 기준 마련

○ 위탁교육생 지원 방법(고등학교)

구 분	지원 방법
소속교(원적교)	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위탁교육생 명단을 위탁교육 기관에 송부 ※ 위탁교육생 제외하고 예산 신청
위탁교육기관4)	소속교로부터 통보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자유수강권 지원 소요 예산을 관내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여 지원·관리

▶(E교) 교육비 납입고지서 및 납입영수증으로 인한 정보 노출  
 - 교육비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등을 일반학생에게만 주고 교육비 지원 학생에게 주지 않음  
 - 납부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고지서를 배부하여 학생들끼리 고지서 비교

## V 행정 사항

### □ 개인정보 보호 철저

- 교육비 지원 학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·점검하고, 담당자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
  - 업무 담당자를 제외하고 교육비 지원 정보 단순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
  - 교직원 연수 시 해당 내용 강조 및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자체 점검·보완
- 학부모가 자녀 모르게 자유수강권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직원이 학생 가정의 경제 사정을 알게 되어 학부모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생 지도에 주의하고, 해당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

**< 교육비 지원 학생의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례 >**

- ▶(A교)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의 개인 상담이 다른 학생에게 노출
- ▶(B교) 학교 내 각종 회의(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)에 다른 학부모가 참여하여 교육비 지원 내역 등 지원 대상 학생의 정보 노출
- ▶(C교) 교육비 지원 학생 대상으로 학교장 훈화(주위 학생들에게 노출)
- ▶(D교)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서로 인한 정보 노출
  -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접수 시 일반학생에게만 받고, 자유수강권을 지원받는 학생에게는 받지 않음

4) 위탁교육기관(7교): 서울산업정보학교,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, 아현산업정보학교,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, 종로산업정보학교,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, 오디세이학교

### □ 교육비 납부 유예 및 수익자부담경비 환불

- 법정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자격 대상자의 경우 NEIS 교육비 지원 심사 완료 시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 유예
- 납부 유예 대상자가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함을 별도로 고지
- 수익자부담경비(학부모 납부 금액)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익자 부담경비 즉시 환불
  - 교육비 지원 대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환불

### □ 지원금 집행 및 관리

- 지원금 예산 집행 및 관리 기준
  - 공립학교: 「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름
  - 사립학교: 「사립학교 교비회계 2025학년도 예산 및 2024학년도 결산지침」에 따름
- 지원금 집행 잔액 반납 기준: 집행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반납하고, 그 미만인 경우 학교운영비로 사용

## VI 기관별 안내 사항

### □ 교육지원청

- 교육지원청별 실정에 맞추어 관내 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집행 관리·감독
- 학교별 자유수강권 소요 예산 신청 수합 후 지원

○ 예산 신청 및 정산 일정을 참고하여 관내 초·중·고 안내

- 소요 예산 신청 및 정산 일정(예정)

구 분	신청 기일	정산 기일
1분기(3~5월)	3월 21일	6월 9일
2분기(6~8월)	6월 9일	9월 5일
3분기(9~11월)	9월 5일	12월 8일
4분기(12~'26.2월)	12월 8일	'26년 3월 6일

\* 분기별로 자유수강권 실제 소요 예산을 파악하여 신청한 금액만큼 재배정

\*\* 4분기 실적 제출 시에는 2025학년도 전체(2025.3.1.~2026.2.28.) 지원 실적 제출

## □ 학교

○ 안정적 운영 지원

-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**신청주의**이므로, 지원 자격이 있더라도 교육비 지원을 **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**
- 학생·학부모의 희망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 독려
- 거부감 또는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·학부모 상담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
- 일반학생과 구분하여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설·운영 금지
- 초등학교 저학년, 상급학교 진학 등 학령기 전환 학생이 지원 대상자 선정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
○ 집행·관리

- 분기별로 학교 지원 실적 및 소요 예산을 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
- 교육지원청 예산 신청 및 정산 일정 참고하여 집행 및 정산

## □ 관련부서

- 초·중등교육과 및 특수교육과: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에 참고
- 총무과: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관련 민원 응대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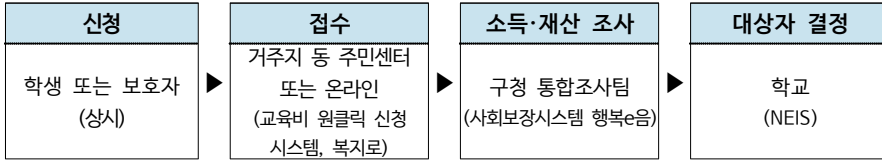
## VII 향후 추진 일정

운영 내용	월별												비고	
	3	4	5	6	7	8	9	10	11	12	1~2			
예산 신청 및 교부														분기별 소요예산 신청 및 교부
자유수강권 지원														지원 기간: 2025.3.~2026.2.
운영 점검														별도 공문 시행 예정
목적사업비 정산 및 반납														목적사업비 정산시스템 (26.2.28.까지 집행잔액 반납)

## 붙임 1

### 2025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

#### □ 신청 처리 흐름도



#### □ 신청 및 심사 절차

- (홍보) 법정자격대상자의 교육비 납부유예 안내,  
교육비 지원 신청 홍보 실시(가정통신문 발송, 현수막 설치 등)
- (신청)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
※ 집중신청기간: 2025. 3. 4. (화) ~ 3. 21. (금)

① 방문 신청	② 온라인 신청(학생의 부모만 신청 가능)
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	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<a href="https://oneclick.neis.go.kr">https://oneclick.neis.go.kr</a> 또는 복지로(보건복지부) <a href="https://www.bokjiro.go.kr">https://www.bokjiro.go.kr</a>

- \* 확인조사대상자(2024학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)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2025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(신규 신청 불요). 온라인(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)에서 교육비 신청대상 여부 조회하여 확인.
- (조사·통보)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산출, 행복e음에서 학교(NEIS)로 조사 결과 송부
- (심사·보장결정) 학교에서 나이스(NEIS)로 심사 작업 진행(4월 하순~5월)
  - 나이스(NEIS)로 통보된 신청 학생 자격 및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기준에 맞게 대상자 선정
  -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확정 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심사 결과 통보 및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상세 안내
- (중지·신청 취소) 교육비 지원 중지를 요청하거나 신청을 취소(철회)하는 경우
  - 중지: [붙임7] 중지 요청서 접수하여 학교 내부결재 후, 보장 중지 처리  
※ 향후 교육비 지원 희망 시, 다시 신청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
  - 신청 취소(철회):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취소(철회) 요청
- (소득·재산 조사 관련 이의신청)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⇨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재조사,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재결정

## 붙임 2

### 교육비 지원 자격 관련 주요 용어설명

용어명	근거법령(주체)	설명	
교육급여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3항 (보건복지부)	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자	
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(여성가족부)	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 만22세 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자 ※ 일반 모·부자 가정과는 다르며, 신청에 의한 법정 자격임 ※ 동 주민센터에서 급여대상자로 통보	
법정차상위 대상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(보건복지부)	차상위차상급대상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
	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	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
		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	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
		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	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
		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	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,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경우로,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(행복e음)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 (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)
소득인정액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(보건복지부)	가구원(학생 본인, 부모, 형제, 자매 등)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된 값 • 소득인정액 =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* + 재산의 소득환산액** * 소득평가액: 가구의 근로, 사업, 재산,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계산 ** 재산의 소득환산액: (각종재산-기본공제액-부채)×월소득환산율	
중위소득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(보건복지부)	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,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. 2025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%는 6,097,773원. (단위: 원)	

구분	2인	3인	4인	5인
중위소득 80% 이하	3,146,126	4,020,282	4,878,218	5,686,554

### 붙임 3 난민 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의 교육비 지원

#### □ 지원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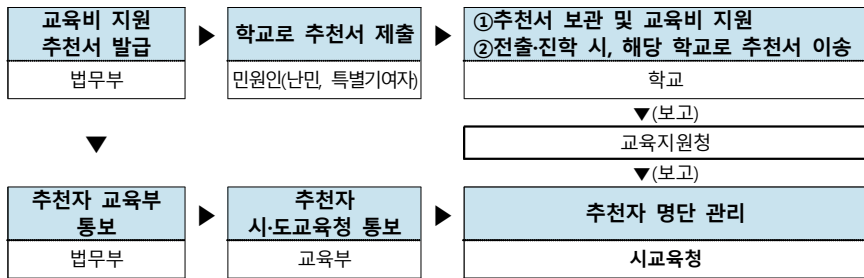
- 「난민법」 제33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, 동법 시행규칙 제13조
-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 제14조의2

#### □ 지원 내용

- (지원 대상)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,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
- (지원항목) 학비, 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, 수익자부담경비
- (지원시기) 학교에 추천서(법무부장관 교육비 지원 추천서)를 제출한 달(月)부터

#### □ 지원 절차

- 업무처리 흐름



- 학교 업무처리

업 무 구 분	내 용
교육비 지원 추천서 수령	• 법무부 발행[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]
대상 관리 및 NEIS 등재	• 지원 대상자 내부결재 후 NEIS-교육비지원-학교장추천관리 / 신규추천으로 등재하여 관리
신규, 철회, 취소 (교육청에 보고)	• 초·중·고 → 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 → 참여협력담당관 (학교명, 학생명, 학년·반, 국적, 추천서 번호·일자, 신규·철회·취소 구분) ※ 지원신청 접수 후 전자문서로 3일 이내 보고 ※ 교육지원청은 학교 공문을 수합하여 매월 5일까지 보고
예산 신청	• 각 사업비 예산요구 서식(자격: 기타)에 맞추어 신청
전·출입 및 상급 학교 진학 시	• 해당 학교로 추천서 이송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•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자 지위 계속 여부 확인 가능
난민 인정 취소 또는 철회 시	• 법무부가 공문으로 통보하고, 학교는 공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

### 붙임 4 부정수급 방지 및 보장 비용 징수

#### □ 관련 근거

##### [초·중등교육법 제60조의10(비용의 징수)]

-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,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##### [초·중등교육법 제67조(벌칙)]

-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
#### □ 부정수급<sup>5)</sup>

- 부정수급자: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로,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타 관계인도 해당
- 부정수급 확인: 시·군·구청은 교육비 지원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내용, 대상자, 실제 소득인정액 등을 학교로 통보

#### □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절차

- 징수 결정: 시·군·구청에서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사하여 교육비 계속 지원 여부 결정. 지원기준 초과로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 항목은 신청 시부터 기산하여 보장비용 징수
- 징수 절차
  - 보장비용 납부통지: 30일 이상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장비용·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징수대상자에게 송부
  - 분할납부: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,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징수 가능
  - 독촉: 징수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,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

#### □ 징수금액 처리

징수한 보장비용은 시도교육청의 그 외 수입으로 처리

#### □ 결손처분

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

#### □ 소멸시효

5년(속임수나 부정방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10년)

#### □ 고발조치

부정수급 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. 단,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,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함

5) 부정수급 예시: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소득·재산이 있는 가구원을 누락시킨 경우,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·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등

